

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제안연월일 : 2021. 11. .

제 안 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지방자치법」 제103조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 임명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준치 필요성이 없어져 폐지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03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없음

다. 입법예고: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
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련 법 령

□ **지방자치법** 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497호, 2021. 10. 19., 일부개정]

제103조(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)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·감독하고 법령과 조례·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·교육·훈련·복무·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.